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1. 개정이유

○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9547호, 2023. 7. 18. 공포, 2024. 7. 19. 시행) 및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(규칙 제3140호, 2024. 3. 28. 공포, 7. 19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44조의3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통보하게 되므로 전자출생신고 시 기존 참여병원에서 개인정보동의로 제공하던 출생증명정보(모의 성명·출생연월일(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출생연월일임) 및 자녀의 성별·출생연월일시)를 통보된출생정보(모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 및 자녀의 성별·수(數)·출생연월일시 일시·순서)로 대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출생증명정보를 삭제함(안제3조제1호나목 삭제)
- 전자출생신고의 접수 처리를 하기 전에 신고인이 첨부한 전자적 이미 지의 출생증명서 내용의 부합함을 출생증명정보 대신 통보된 출생정보 와 확인을 한 후에 출생신고서에 "출생정보 확인"이라고 표시함(안

제5조제4항)

- O 기존 출생증명정보가 출생정보로 대체됨에 따라 출생증명정보 보관기 간을 삭제함(안 제5조제5항 삭제)
- 3.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
- 4. 신 · 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1호 중 "작성 등"을 "작성"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 다.

제5조제4항 중 "제3조 제1호의 나.의 출생증명정보"를 "법 제44조의3에따라 통보된 출생정보"로, "출생증명정보 확인"을 "출생정보 확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전자신고 방법) 전자신고를 하	제3조(전자신고 방법)
려는 사람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	
록시스템(https://efamily.scourt.go.kr	
이하 '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'이	
라 한다)에서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,	
필요한 사항을 입력, 첨부하는 등의	
방법으로 법과 규칙이 정한 신고서	
기재사항에 대한 정보와 첨부서류를	
제공하여야 한다.	
1. 신고서 <u>작성 등</u>	1. 신고서 <u>작성</u>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제2조 제2호의 신고(이하	<u>〈삭 제〉</u>
"전자출생신고"라고 한다)	
를 하려는 사람은 의료기관	
의 장이 출생증명정보(모의	
성명·출생연월일 및 자녀의	
성별·출생연월일시를 말함)	
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	
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제	
공하도록 하여야 한다.	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전자신고 접수 및 처리) ① ~	제5조(전자신고 접수 및 처리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전자출생신고의 경우, 처리관	4
서 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처리를	
하기 전에 제3조 제1호의 나.의 출	<u>법 제44조의3에 따라 통보</u>

생증명정보가 제3조 제2호의 라.에 따라 첨부된 출생증명서 내용에 부합함을 전자적으로 확인한후, 출생신고서 우측 하단 여백에 "출생증명정보 확인"이라고 표시한다.

⑤ 제3조 제1호의 나.의 출생정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부터 3년간 보관한다. 다만 전자출생신고를 수리하면 출생정보는 삭제한다.

<u>된 출생정보</u>	
"출생정보 확인"	
<u>〈삭 제〉</u>	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	
연락처	(02) 3480-1327